대법원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오석준)는,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도급업체 회사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,

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,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[피고인 A(대표이사): 징역 1년, 피고인 회사: 벌금 1억 원]을 확정함(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공소사실의 요지

- 피고인 A는 피고인 ○○제강 주식회사('피고인 회사')의 대표이사임
- 피고인 회사는 △△산업(개인사업체)과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△△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○○가 무게 1,220kg 상당의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는 도중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하였음

(1) 피고인 A

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

■ 피고인 A는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
자로서 관계수급인인 △△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

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, 2022. 3. 16. 근로자인 피해자 김○○이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

■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'중대재해처벌법')위반(산업재해치사)

● 피고인 A는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.운영.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,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.절차를 마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.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종사자 김○○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음

(2) 피고인 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 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(☜ 양벌규정)

●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의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김○○을 사망에이르게 하고,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음

2. 소송경과

- 검사는 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으로, ② 위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 해치사)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 제기하였음
- 이에 대해 제1심 및 원심 모두 ①에 대해 **상상적 경합**, <u>②에 대해 상</u> 상적 경합으로 판시하였음

■ 제1심: 전부 유죄

● 피고인 A: 징역 1년

● 피고인 회사: 벌금 1억 원

■ 원심: 쌍방 항소기각

● 검사가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■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 재해치사)죄의 죄수관계

나, 판단 결과

■ 상고기각

다. 판단 이유

-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(형법 제 40조).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함(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731 판결,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)
-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, 보호법익,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,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
 - [①보호법익의 공통성] 산업안전보건법은 '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.증진함'을 목적으로 하고(제1조), 중대재해처벌법은 '사업

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.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보호함'을 목적으로 함(제1조). 위 각 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'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'하고 '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.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'하는 것을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.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. 이는 사람의 생명.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임

- [②행위의 동일성]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.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 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그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수 있음.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
- [③주의의무의 동일성]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(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642 판결,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 참조).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¹)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²)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

^{1) ■}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
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^{1.}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
^{2) ■} 산업안전보건법

제63조(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

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

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음. 따라서 <u>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</u> <u>치사)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</u> 경합 관계에 있음

4. 판결의 의의

- <u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</u>에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음(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642 판결,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5545 판결 등)
- 2022. 1. 27.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바,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 해치사)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, 업무상과실치사 죄의 죄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되었고, 이에 대한 대법원 선례는 없었음
 - 이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내지 업무상과실치 사죄로 처벌받은 대표이사 등에 대해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 벌할 수 있는지 여부와도 관련 있는 문제임
-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양죄의 죄수 관계에 대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하였음

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구 착용 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.